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참여기관 공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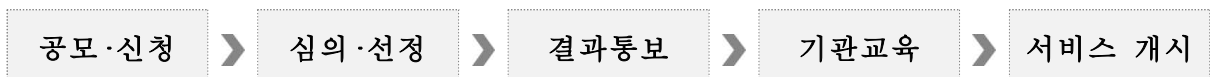
□ 참여공모 및 신청

- (공모기간) 2026.2.11.(수) 14:00 부터 상시 공모
- (참여구분)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또는 “주·야간보호형”
- (대상) 동일한 기관기호로 2개 이상의 급여종류가 제공 가능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한 기관 ... [별첨2] 참조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구분	가정방문형	주·야간보호형
필수 급여종류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공모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포털
 - * 게시경로 :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기관포털) 기타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기관이 직접 신청
 - * 신청경로 : 기타 > 통합재가서비스 > 통합재가 기관신청

<통합재가서비스 참여 프로세스>



※ 참여 신청은 최초 공모 이후 상시 운영

□ 심의 및 선정

- **(선정심의)** 전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의 실시(매월)
 - 인력기준 등 미 충족 기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별첨2] 참조
- **(선정방법)** 선정협의체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 후 최종선정
- **(선정기준)** 추후 선정협의체를 통해 기준 확정 후 공개 예정
- **(결과통보)** 신청 월 기준 익월에 기관별 개별 통보
- **(서비스 개시)** 신청월 기준 익익월
 - ※ 예시) 2월 신청 시 4월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별첨1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개요

□ 서비스 대상

- (제공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제외대상) ①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받는 자, ②타 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가 제한되는 자

□ 제공기관 ...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며, 공단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하나의 기관기호로 ①방문간호⊕방문요양 또는 ②주·야간보호⊕방문요양을 포함한 2종 이상의 급여제공이 가능한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 ... [별첨2] 참조

□ 제공서비스

- (통합재가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상태변화를 반영하여, 단일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
- (서비스유형)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형'으로 구분
 - 가정방문형 : 방문간호를 기반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 주·야간보호형 : 주·야간보호를 기반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 제공 인센티브

- (가정방문형) 수급자 등급별 월 한도액 추가 산정(110%),
- (주·야간보호형) 가산금(수급자 1인당 10만원) 매월 지급

별첨2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시설·인력기준

□ 시설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준용

□ 인력기준

- (가정방문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방문간호에 간호사(시설장 포함) 1명, 방문요양에 수급자 수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월 기준근무시간 충족)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통합재가 가정방문형		1명 ※ 방문요양에 배치	간호사 1명 (시설장 포함)		
방문간호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방문요양	1명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주·야간보호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주·야간보호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각 1명 배치(월 기준근무시간 충족, 단, 물리(작업)치료사는 월 기준근무시간 50%이상)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통합재가 주·야간보호형		1명	1명	1명				
주·야간보호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 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이 상)	1명	1명
주·야간보호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